

KLPGA 대의원 선출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 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20조의 2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⑤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 후보자라 함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대의원 투표자라 함은 대의원을 선출할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자격 · 임기 및 업무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격 및 임기)

1. 본 위원회는 정관 제6장(위원회), 제32조(위원회의 설치), 제33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2. 협회는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최소 10일 이전까지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3인(위원장 1인,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위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대의원 선거가 최종 종료되는일까지로 한다.
단, 재 선거나 추가 선거를 실시할 경우 또는 선거 운동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심의할 경우 해당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연장한다.
6. 본 위원회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선거관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가. 대의원 선거 공고
 - 나. 대의원 후보자 및 투표자 명부의 확정
 - 다. 선거 관련 사무, 투표 및 대의원 선출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
 - 라. 선거 지침에 관한 업무
 - 마. 부정 선거 운동 감시, 조사 및 단속에 관한 업무
 - 바. 기타 선거 업무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

제 3 장 선거운영

제6조(선거운동 금지사항)

1.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거 운동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 자격은 상실된다.
 - 가. 회원 간 금전, 물품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 나. 회원 간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주동, 참여하는 행위
 - 다. 선거와 관련하여 회원 친목 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마. 선거관리위원 및 협회 임직원은 특정인을 지지, 옹호, 격려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대의원의 임기 및 선출 인원)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대의원의 선출 인원은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며, 70명을 선출한다.
단, 2027년 대의원 선출 시부터는 80명을 선출한다.

제8조(대의원 후보자)

1. 대의원 후보자는 정회원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된 자
2. 연 1회 이상 총회 참석이 가능한 자
3. 다음 각 호의 자는 대의원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다.
 - 가. 협회 또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주식회사(이하 “투어” 라 한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
 - 나. 대의원 연임자(연속으로 2회)
 - 다. 대의원 후보자 포기각서를 제출한 자
 - 라. 해외 거주자(단, 해외 거주 사실이 확인된 자에 한함)
 - 마. 협회 회비를 미납한 자
 - 바. 협회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에 의해 징계(출장정지, 자격정지) 중이거나, 징계(출장정지, 자격정지) 종료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제9조(대의원 투표자)

1. 대의원 투표자는 대의원 선출 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다음 각 호의 자는 대의원 투표자 자격을 제한한다.
 - 가. 협회 회비를 미납한 자
 - 나. 협회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에 의해 징계(출장정지, 자격정지) 중인 자

제10조(대의원 후보자/투표자 확정 및 선출 기한)

1. 대의원 후보자/투표자 확정은 정기총회 개최 60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제11조(대의원 선출 방법 및 확정 원칙)

1. 대의원 선출은 현장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단, 투표 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1인 1투표의 직접 선거로 진행한다.
2. 대의원 선출은 5명 이상의 정회원의 득표를 받은 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3. 5명 이상의 정회원 득표를 받은 대의원 후보자 중, 최종 순위자가 동표일 경우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가. 회원 중 관례를 존중하여 회원번호 끝자리로 확정한다.
 - 나. 회원번호 끝자리는 대의원 선출 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적용한다.
 - 1) 회원번호 끝자리는 매 대의원 선출 시 : 1, 6 / 2, 7 / 3, 8 / 4, 9 / 5, 0 / 6, 1 / 7, 2 / 8, 3 / 9, 4 / 0, 5 순으로 한다.

단, 2024년도 대의원 선출 시는 회원 번호 끝자리 9, 4로 한다.

 - 2) 상기 1)목으로 최종 순위자가 확정되지 못할 경우 회원번호 순으로 결정 한다.
4. 대의원 선출 인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가. 추가 선거 기간을 설정하여 결원된 대의원 선출 인원을 충원한다.
 - 나. 추가 선거 기간의 대의원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1) 1표 이상 획득한 자
 - 2) 회원번호 끝자리에 해당되는 대의원 후보자

가) 회원번호 끝자리는 다음과 같다.

- 1, 6 / 2, 7 / 3, 8 / 4, 9 / 5, 0 / 6, 1 / 7, 2 / 8, 3 / 9, 4 / 0, 5순으로 대의원 후보자를 결정한다.

단, 2024년도 대의원 선출 시는 회원번호 끝자리 9, 4로 한다.

다. 추가 선거 기간의 득표는 0표에서 시작한다. 단, 1차 선거 기간의 득표는 승계되지 않는다.
5. 추가 선거 기간 동안 5표 이상을 획득한 대의원 후보자가 결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기 3항 가, 나 호의 기준으로 선출한다.
6. 추가 선거 기간 안에 결원 인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추가 선출 기간 안에 선출된 대의원 수를 최종 인원으로 확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12조(기타사항)

1. 대의원 선출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단, 연속으로 총 2회까지만 가능
2. 협회 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제3항에 의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결권을 타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대의원은 KLPGA 분과위원회(위원장, 위원 등)를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일반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협회 정관과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08. 제정)

본 규정은 2023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